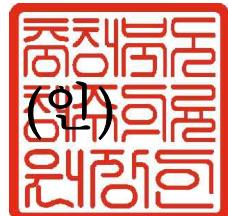


□ 공고 제2021-84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정관 제57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 일부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원장) 제3항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는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원장의 추천)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가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가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1항 “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공공의료본부,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구로 지역 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를 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감사팀, 공공의료본부,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구로 지역 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의료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의료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3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제18조, 제21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7조,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43조의2 제2항, 제44조, 제51조 제1항, 제56조의1, 제59조 제4항, 제6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70조 제1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②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4조, 제53조 1항 및 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③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④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⑤ 청주의료원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7조 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⑥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190조 제1항, 제201조 제2항, 제206조, 제229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⑦ 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⑧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⑨ 전공의 수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6조, 제39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⑩ 관사운영관리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80조 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⑫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24조 (원장) (생략) ③원장은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p>	<p>제24조 (원장) (현행과 같음) ③원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p>
<p>제26조 (원장의 추천)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가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제26조 (원장의 추천)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가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제27조 (하부조직) ①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u>기획조정실, 공공의료본부</u>,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제27조 (하부조직) ①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u>기획조정실, 감사팀, 공공의료본부</u>,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제34조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의료원의 재산 중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4조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의료원의 재산 중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제18조, 제21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7조,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43조의2 제2항, 제44조, 제51조 제1항, 제56조의1, 제59조 제4항, 제6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70조 제1항의 “<u>다음 각호의 1에</u>”를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u>”로 한다.</p>	
<p>②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 제34조, 제53조 1항 및 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u>”로 한다.</p>	
<p>③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u>”로 한다.</p>	

④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⑤ 청주의료원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7조 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⑥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190조 제1항, 제201조 제2항, 제206조, 제229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⑦ 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⑧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⑨ 전공의 수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6조, 제39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⑩ 관사운영관리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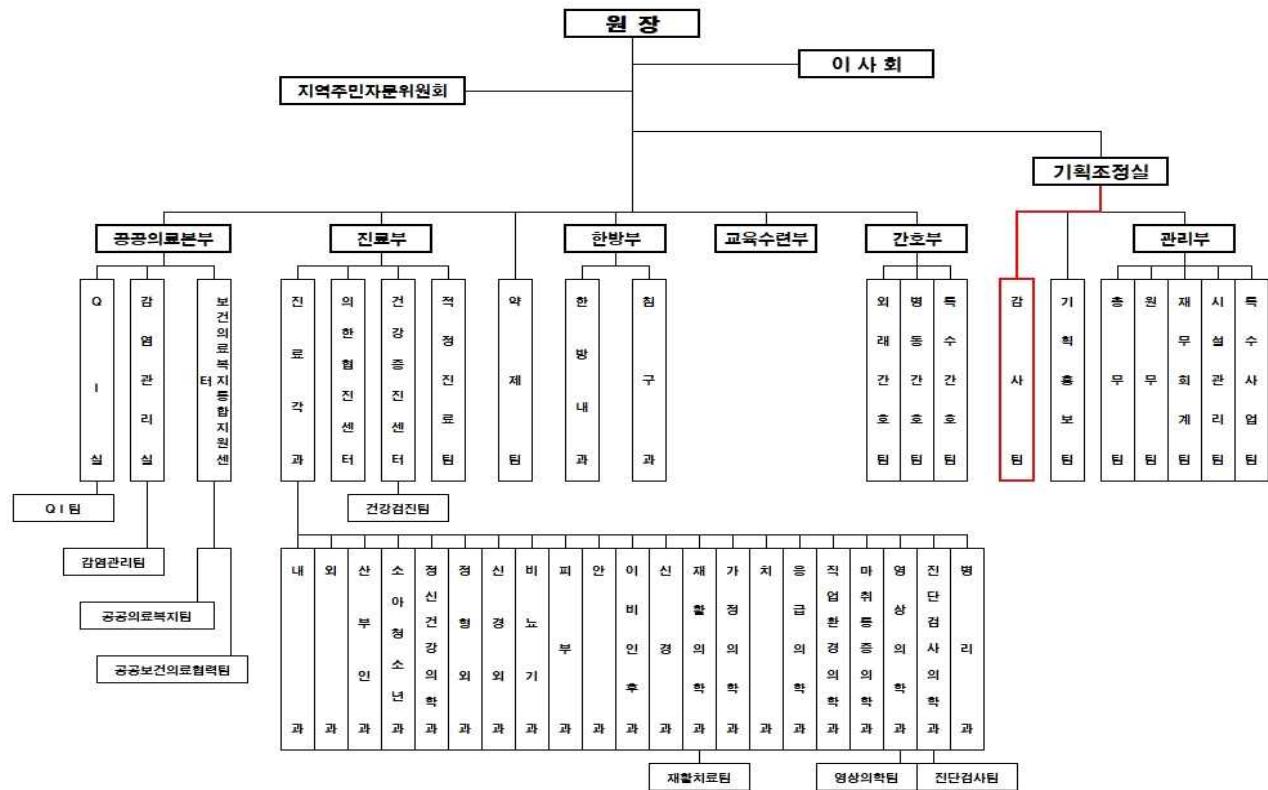
제1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80조 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⑫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현행)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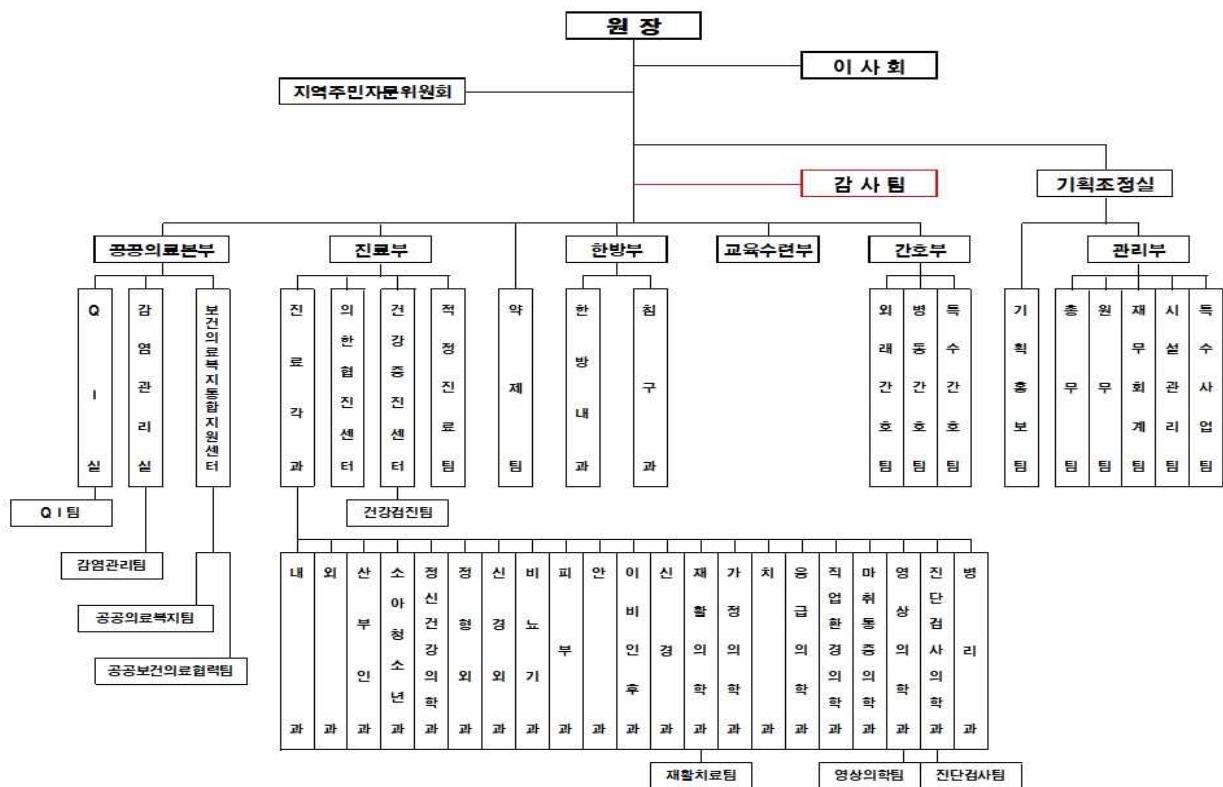
청주의료원기구표



(개정)

[별표 1]

청주의료원기구표



□ 공고 제2021-85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98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구) 제1항 “의료원에 이사회를 두며, 기획조정실, 공공의료본부,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을 두고,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두며, 기획조정실, 감사팀, 공공의료본부,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을 두고,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실장 1인을 두며, 원장을 보조하여 감사, 기획, 홍보, 대외협력, 예산, 관리부 등 행정 분야를 총괄하고, 하부 조직으로 감사팀, 기획홍보팀, 관리부를 둔다. 기획홍보팀에는 전산실을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특수사업팀을 둔다.”를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실장 1인을 두며, 원장을 보조하여 (삭제) 기획, 홍보, 대외협력, 예산, 관리부 등 행정 분야를 총괄하고, 하부 조직으로 (삭제) 기획홍보팀, 관리부를 둔다. 기획홍보팀에는 전산실을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특수사업팀을 둔다.”로 한다.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1(감사팀)을 삭제한다.

제17조(정원) 제2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외래간호팀) 제1호 “외래 간호근무계획의 작성, 변경 및 근무관리”를 “외래 간호근무계획의 작성, 변경 및 근무관리”로 한다.

제35조 제7호, 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특수간호팀) 제7호“정신과 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관리에 관한 사항”, 제8호“심리학적 검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한다.

제1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감사팀”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1조(위원회등)(생략)을 제41조(감사팀)“①감사팀에는 팀장 1인을 두며, 감사 등을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②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및 외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부조리 신고접수 및 처리, 4.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생략)을 제42조(위원회 등)(현행 제41조와 같음)으로 한다.

제43조(시행세칙)(생략)을 제43조(권한의 위임)(현행 제42조와 같음)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시행세칙)(현행 제43조와 같음)으로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종	직급	계	임원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98	1	68	6	42	106	196	179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3		67	4	35	90	168	159	
		의무직		53		53						
		의 사		46		46						
		치 과 의		5		5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8	62	107	79	
		의료기술직		91			2	7	20	40	22	
		임상병리사		20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6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7								
일 반		사회복지사		7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직(간호모사)		87					8	21	58	
		소 계		74		1	2	7	16	28	20	
		관리		48		1	2	7	13	19	6	
		행정		36								
일 반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6					3	9	14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4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개정)

[별표 1]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종	직급	계	임원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01	1	68	6	42	106	197	181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6		67	4	35	90	169	161		
		의무직	53		53							
		의 사	46		46							
		치 과 의	5		5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8	62	107	79		
		의료기술직	91			2	7	20	40	22		
		임상병리사	20									
		방사선사	17									
일 반		물리치료사	16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7									
		사회복지사	7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90					8	22	60		
일 반		소 계	74		1	2	7	16	28	20		
		관리	48		1	2	7	13	19	6		
		행정	36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6					3	9	14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4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 (기구) ①의료원에 이사회를 두며, <u>기획조정실</u> , <u>공공의료본부</u> ,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을 두고,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 (기구) ①의료원에 이사회를 두며, <u>기획조정실</u> , <u>감사팀</u> <u>공공의료본부</u> ,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을 두고,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3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실장 1인을 두며, 원장을 보조하여 <u>감사</u> , 기획, 홍보, 대외협력, 예산, 관리부 등 행정 분야를 총괄하고, 하부조직으로 <u>감사팀</u> , 기획홍보팀, 관리부를 둔다. 기획홍보팀에는 전산실을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특수사업팀을 둔다.	제13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실장 1인을 두며, 원장을 보조하여 <u>(삭제)</u> 기획, 홍보, 대외협력, 예산, 관리부 등 행정 분야를 총괄하고, 하부조직으로 <u>(삭제)</u> , 기획홍보팀, 관리부를 둔다. 기획홍보팀에는 전산실을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특수사업팀을 둔다.
<u>제13조의1(감사팀) 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및 외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u> <u>2.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u> <u>3. 부조리 신고접수 및 처리</u> <u>4.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u> 	<u>(삭제)</u>
제33조(외래간호팀) (생략) 1. <u>외래</u> 간호근무계획의 작성, 변경 및 근무관리	제33조(외래간호팀) (현행과 같음) 1. <u>외래</u> 간호근무계획의 작성, 변경 및 근무관리
제35조(특수간호팀) 특수간호팀은 정신병동, 재활병동에 수간호사를 둘 수 있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6. (생략)	제35조(특수간호팀) 특수간호팀은 정신병동, 재활병동에 수간호사를 둘 수 있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6. (현행과 같음)
7.(신설)	7. <u>정신과 환자의 사회복귀 및</u>

<p>8.(신설)</p> <p>제10절(신설)</p> <p><u>제41조(위원회 등) ①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p> <p><u>제42조(권한의 위임) (생략)</u></p> <p><u>제43조(시행세칙) (생략)</u></p> <p>(신설)</p>	<p><u>재활관리에 관한 사항</u></p> <p><u>8. 심리학적 검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제10절 감사팀</p> <p><u>제41조(감사팀) ①감사팀에는 팀장 1인을 두며, 감사 등을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u></p> <p><u>②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및 외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u> <u>2.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u> <u>3. 부조리 신고접수 및 처리</u> <u>4.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u> <p><u>제42조(위원회등) (현행 제41조와 같음)</u></p> <p><u>제43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42조와 같음)</u></p> <p><u>제44조(시행세칙) (현행 제43조와 같음)</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공고 제2021-86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99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사의구분)제4항 “일상감사는 병원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를 “일상감사는 병원의 주요업무 집행 등에 대하여 집행 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1호~4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5호~제8호는 신설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계요구 :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규정, 「복무규정」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보전·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규정·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부서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 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3조(감사의 구분) ①~③ (생략)</p> <p>④일상감사는 <u>병원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u>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p>	<p>제3조(감사의 구분)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일상감사는 <u>병원의 주요업무 집행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에 앞서</u>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p>
<p>제14조(처분요구 등) (생략)</p> <p>1. <u>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주의 및 경고</u></p> <p>2. <u>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검토</u></p> <p>3. <u>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u></p> <p>4. <u>관계직원에 대한 교육</u></p> <p>5. <u>(신설)</u></p> <p>6. <u>(신설)</u></p>	<p>제14조(처분요구 등) (현행과 같음)</p> <p>1. <u>변상명령</u>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u>징계요구</u> :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규정, 「복무규정」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3. <u>시정요구</u>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보전·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u>주의요구</u>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 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p> <p>5. <u>개선요구</u> : 감사결과 규정·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6. <u>권고</u>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부서에서 개선방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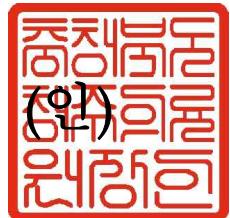
	<p>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부서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8. 고발·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 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공고 제2021-87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500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복리후생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복리후생비 지급구분 및 기준 등) 제1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복리후생비지급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대상 기간	지급시기	지 급 액	비 고
1.~9. (생략)					
10. 특정업무 활동비	담당직원 (예산·결산· 계약)	매월	급여일	○ 80천원	부서장 제외, 병급지급 불가
11. (생략)					

<개정>

[별표 1]

복리후생비지급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대상 기간	지급시기	지 급 액	비 고
1.~9. (현행과 같음)					
10. 특정업무 활동비	담당직원 (예산·결산· 계약) <u>(신설)</u> <u>공공보건의료</u> <u>협력체계</u> <u>구축사업을</u> <u>겸임하는</u> <u>의사</u>	매월	급여일	○ 80천원 <u>(신설)</u> <u>○ 200천원</u>	부서장 제외, 병급 지급불가 <u>(신설)</u> <u>공공보건의료협력</u> <u>체계 구축 사업 인</u> <u>건비 지원시까지</u>
11. (현행과 같음)					

□ 공고 제2021-88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501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제2호의 아목중 “의료법 제23조의 3,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 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료법 제23조의 5,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 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항 중 “별제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준수여부 점검)제1항 중 “매분기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 【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 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생략)</p> <p>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사. (생략)</p> <p>아. <u>의료법 제23조의 3</u>,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p>	<p>제2조 【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 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현행과 같음)</p> <p>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사. (현행과 같음)</p> <p>아. <u>의료법 제23조의 5</u>,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p>
<p>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p> <p>---<u>별제</u>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p> <p>---<u>별지</u>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5조 【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 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강령 준수여부 등을 <u>매분기 1회 이상</u>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p>	<p>제35조 【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 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강령 준수여부 등을 <u>매년 1회 이상</u>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p>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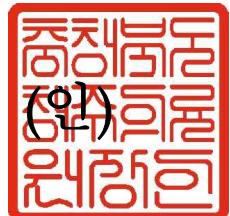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고 제2021-89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502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진료비후불처리) 제3항 “후불결정환자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를 “후불결정환자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산 저장매체로 관리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3조(진료비 감면) ① (생략) 1.~3. (생략) <u>4. 정신요양소 보험입원환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u></p>	<p>제3조(진료비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u>4. 삭제</u></p>
<p>제7조(진료비후불처리) ①~② (생략) ③ 원무부서장은 후불진료비 납부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u>후불결정환자관리대</u> <u>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 운용하여</u> <u>야 한다.</u></p>	<p>제7조(진료비후불처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 원무부서장은 후불진료비 납부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u>후불결정환자관리대</u> <u>장(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산저장매</u> <u>체로 관리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p>

□ 공고 제2021-90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구급차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503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구급차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구급차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리) “구급차량의 정비 유지관리 및 운행업무는 경리부서장이 관장한다.”를 “구급차량의 정비 유지관리 및 운행업무는 원무부서장이 관장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배차) 제1항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료각과에서 배차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내 및 인근거리 환자의 수송을 위하여 전화 또는 구두통보로서 승인을 갈음한다.”를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료각과에서 차량관리규정의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내 및 인근거리 환자의 수송을 위하여 전화 또는 통보로서 승인을 갈음한다.”로 한다.

제4조(배차) 제2항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 구급차량 운행은 당직의사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당직자 책임 하에 운행한다.”를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 구급차량 운행은 당직의사의 요청에 의하여 원무당직자 책임 하에 운행한다.”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행증) 진료각과에서 제4조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리부서장 또는 행정당직자가 배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운행증을 발급하되 제6조의 순위에 의한다.”를 “제5조(운행허가) 진료각과에서 제4조 규정에 따라 차량운행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무부서장 또는 원무당직자가 배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운행증을 발급하되 제6조의 순위에 의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행일지) “경리부서장은 일일배차 및 운행일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급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를 “원무부서장은 일일 배차 및 운행일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급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행) 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운행증(별지 제2호 서식)을 소지하고 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된다.”를 “제8조(운행허가)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소지하고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행방통제) “구급차 사용자는 구급차량운행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한다.”를 “구급차 사용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의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관리) 구급차량의 정비 유지관리 및 운행업무는 <u>경리부서장이 관장한다.</u></p> <p>제4조(배차) ① (생략) 진료각과에서 <u>배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u>를 원무팀에 (생략) 한다. 다만, 시내 및 인근거리 환자의 수송을 위하여는 <u>전화 또는 구두 통보로서</u> 승인을 갈음한다.</p> <p>② (생략) 당직의사의 요청에 의하여 <u>행정당직자 책임 하에 운행한다.</u></p> <p>제5조(운행증) 진료각과에서 제4조 규정에 따라 <u>배차신청</u>이 있을 경우에는 <u>경리부서장 또는 행정당직자가 배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운행증을 발급</u>하되 제6조의 순위에 의한다.</p> <p>제7조(운행일지) <u>경리부서장은</u> 일일배차 및 운행일지를 (생략) 한다.</p> <p>제8조(운행) 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u>차량운행증(별지 제2호 서식)</u>을 소지하고 (생략) 된다.</p> <p>제10조(행방통제) 구급차 사용자는 <u>구급차량운행증</u>을 반드시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한다.</p>	<p>제2조(관리) 구급차량의 정비 유지관리 및 운행업무는 <u>원무부서장이 관장한다.</u></p> <p>제4조(배차) ① (현행과 같음) 진료각과에서 <u>차량관리규정의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u> 원무팀에 (현행과 같음) 한다. 다만, 시내 및 인근거리 환자의 수송을 위하여는 <u>전화 또는 통보로서</u> 승인을 갈음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당직의사의 요청에 의하여 <u>원무당직자 책임 하에 운행한다.</u></p> <p>제5조(운행허가) 진료각과에서 제4조 규정에 따라 <u>차량운행허가신청</u>이 있을 경우에는 <u>원무부서장 또는 원무당직자가 배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제6조의 순위에 의해 결정한다.</u></p> <p>제7조(운행일지) <u>원무부서장은</u> 일일배차 및 운행일지를 (현행과 같음) 한다.</p> <p>제8조(운행) 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u>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u> 소지하고 (현행과 같음) 된다.</p> <p>제10조(행방통제) 구급차 사용자는 <u>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u> 반드시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한다.</p>
	부 칙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공고 제2021-91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 8. 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504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제규정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구성) 제2항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팀장, 기획홍보팀장, 총무팀장, 원무팀장, 재무회계팀장,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진료부장, 간호부장, 기획홍보팀장, 총무팀장, 원무팀장, 건강검진팀장, 외래간호팀장, 근로자 대표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구성)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진료부장, 간호부장, <u>약제팀장</u> , 기획홍보팀장, 총무팀장, 원무팀장, <u>재무회계팀장</u> , <u>시설관리팀장</u> 으로 한다.	제8조(구성)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진료부장, 간호부장, <u>(삭제)</u> , 기획홍보팀장, 총무팀장, 원무팀장, <u>(삭제)</u> , <u>(삭제)</u> , <u>건강검진팀장</u> , <u>외래간호팀장</u> , <u>근로자 대표</u> 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